

총리령 제 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유·무선 전화기 등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 결제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자본금의 규모 및 자기자본 현황 등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채무지급보증 범위를 포함한다)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
3.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
4. 반품 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
5.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
6. 해당 결제수단의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
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

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재화 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변동으로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할 것. 다만,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변동이 잦은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매일 말일의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할 것

2.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전자결제수단이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로부터 다른 소비자에게 권리 이전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권리 이전된 소비자를 말한다)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피해보상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어서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소지한 소비자

가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보험회사 또는 은행”이라 한다)은 30일 이상의 채권 신고기간을 두어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정당한 소비자의 채권 신고금액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은행**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각 소비자의 정당한 채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균등하게 나누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본다.



7fe01be1-d62f-473a-b720-a0787a820f1e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small>(서명 또는 인)</small>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small>(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적습니다)</small>
참고 사항	판매 방식	[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잡지, [ ]기타
	취급 품목	[ ]종합물,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건강/식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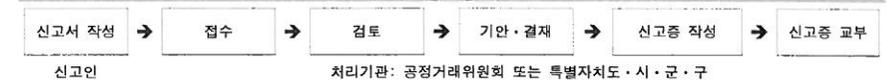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 상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위의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1. 서비스 제공자
2. 서비스 이용기간
3. 서비스 제공조건
4. 서비스 등록번호
5. 서비스 이용 확인 연락처

년 월 일

서비스 제공 사업자명  
또는 관련 단체명

직인

2210mm×297mm[백상지 12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통신판매업 신고증

1. 상 호
2.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대표자의 생년월일(남·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7fe01be1-d62f-473a-b720-a0787a820f1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통신판매업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신고 항목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				
	폐업				
사유	영업재개				
	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7fe01be1-d62f-473a-b720-a0787a820f1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 297mm[백상지 80g/㎡]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단체명		
주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지부의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홈페이지 주소	호스팅서버 소재지	
설립 연월일		
회원 현황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합니다)	
설립목적		
사업 내용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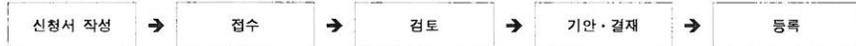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2.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자료 3.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에 관한 자료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1.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우편환·우편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 라 함은 유·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 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란 유·무선 전화기 등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 이라 한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전화·모사전송·이동전화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제수단발행자의 고지) 법 제8조제4항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 결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법 제8조제3항에서 “전자문서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전화·팩스·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리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용과 이용요금,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 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

<p>주소, 자본금 규모 및 자기 자본현황 등</p> <p>2. <u>소비자피해보상보협계약등</u>의 체결사실 및 계약의 내용(채무지급보증범위를 포함한다)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p> <p>3. 잔여금의 현금환불과 관련된 사항</p> <p>4.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p> <p>5. <u>당해</u>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p> <p>6. <u>당해 결제수단</u> 사용상 제한 및 주의사항</p> <p>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u>당해</u>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p> <p>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u>법 제10조제</u></p>	<p>우편주소, 자본금의 규모 및 자기자본 현황 등</p> <p>2. <u>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협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협계약등”이라 한다)의</u> 체결사실 및 <u>계약내용</u>(채무지급보증 범위를 포함한다)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p> <p>3. <u>납은 금액의 현금 반환과</u> 관련된 사항</p> <p>4. 반품 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p> <p>5. <u>해당</u>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몰 현황</p> <p>6. <u>해당 결제수단의 사용상 제한</u> 및 주의사항</p> <p>7. 그 밖에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u>해당</u>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u>법 제10조제1</u></p>
--	---

<p><u>1항제1호 내지 제5호에</u> 규정된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정보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p> <p>③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u>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u>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p>	<p><u>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u>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u>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p> <p>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u>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u>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p>
---	--

있다. 이 경우 대표자성명·모사전송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 설>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휴·폐업 등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 영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리는 한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 1.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를 하는

매체의 첫 번째 면에 알릴 것

2. 통신판매중개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알릴 것

3. 통신판매중개자가 청약의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에 대한 절차에서 알릴 것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때 그 글씨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그보다 더 크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고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보험계약 성립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변동으로 영 제28조제2항제3호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보험계약 성립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변동으로 영 제28조제3항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지체없이 조정할 것. 다만,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변동이 찾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지체없이 조정할 것

- 2. 보험금은 당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전자결제수단이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로부터 다른 소비자에게 권리 이전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권리 이전된 소비자를 말한다)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할 것. 다만,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의 변동이 찾은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의 전자결제수단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지체 없이 조정할 것

- 2.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전자결제수단이 전자결제수단의 구매자로부터 다른 소비자에게 권리 이전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권리 이전된 소비자를 말한다)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가 체결하여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피해보상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소지한 소비자가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자는 30일 이상의 채권신고기간을 두어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신고기간중 접수된 정당한 소비자의 채권신고금액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영 제28조제1항제8호의 자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각 소비자의 정당한 채권신고금액을

1.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어서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소지한 소비자가 결제수단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보험회사 또는 은행”이라 한다)은 30일 이상의 채권 신고기간을 두어 소비자로 하여금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채권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정당한 소비자의 채권 신고금액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은행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각 소비자의 정당한 채권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비례균분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례하여 균등하게 나누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것  
제13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